

#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 안 번호	95-25
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6. 3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  
(운영위원회안)

## 1. 제안이유

-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달서구의회의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 조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일부 소관업무 조정

-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견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대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기 위함.

2. 관련법규

-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
- 지방자치법 제31조, 제50조, 제51조 부칙4조, 동법시행령 제20조의2
- 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
-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2조, 제3조, 제5조

3. 주요골자

- 가.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설치한 상임위원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정수증가로 상임위원회의 수와 위원정수를 개정함(안 제2조)
- 나. 의회운영위원회의 견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함(안 제2조)
- 다. 현행의 3개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1개 상임위원회 증설로 직무와 소관업무를 조정함(안 제3조 제2항)
- 라.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대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조정함(안 부칙 제2항)

4. 개정조례(안)

##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영위원회 9명
2. 내무위원회 11명
3. 사회산업위원회 11명
4. 도시건설위원회 10명

제3조 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
2. 내무위원회
  -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사회산업위원회
  - 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4. 도시건설위원회
  - 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.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	<p>1. <u>내무위원회</u> 12명</p> <p>2. <u>사회·도시위원회</u> 13명</p> <p>3. <u>운영위원회</u> 10명</p>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.....	<p>1. <u>운영위원회</u> 9명</p> <p>2. <u>내무위원회</u> 11명</p> <p>3. <u>사회산업위원회</u> 11명</p> <p>4. <u>도시건설위원회</u> 10명</p>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)	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내무위원회</u></p> <p>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2. <u>사회·도시위원회</u></p> <p>가. 사회·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<u>운영위원회</u></p> <p>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</p>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)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</p> <p>1. <u>운영위원회</u></p> <p>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내무위원회</u></p> <p>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<u>사회산업위원회</u></p> <p>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4. <u>도시건설위원회</u></p> <p>가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

## 6. 관련법규 발췌

###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

제26조(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확정)

- ② 자치구,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는 읍·면·동을 단위로 확정하되, 선거구의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법

제31조(의원의 임기) 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제50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,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,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

이 경우 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

제51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부칙4조(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만료된다.

#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20조의2(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

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, 그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.

[별표 7]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(제20조의 2관련)

구 분	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 (운영위원회포함)의 수
의원정수 41인이상	5개 이내
의원정수 31인이상 40인이하	4개 이내
의원정수 13인이상 30인이하	3개 이내

비고 :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한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 까지 위 표에 의한 상임위원회에 놓여촌 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
제2조(선거구 및 선거구별의원정수)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[별 표]

선 거 구 명	의 원 정 수	선 거 구 역
달 서 구	33	
성 당 1 동 선거구	1	성당1동일원
성 당 2 동 선거구	2	성당2동일원
두 류 1 동 선거구	1	두류1동일원
두 류 2 동 선거구	2	두류2동일원
두 류 3 동 선거구	1	두류3동일원
성 서 1 동 선거구	1	성서1동일원
성 서 2 동 선거구	2	성서2동일원
성 서 3 동 선거구	2	성서3동일원
성 서 4 동 선거구	2	성서4동일원

선 거 구 명	의 원 정 수	선 거 구 역
본 리 동 선 거 구	2	본리동일원
월 배 1 동 선 거 구	1	월배1동일원
월 배 2 동 선 거 구	2	월배2동일원
월 배 3 동 선 거 구	2	월배3동일원
월 배 4 동 선 거 구	2	월배4동일원
월 배 5 동 선 거 구	2	월배5동일원
월 배 6 동 선 거 구	2	월배6동일원
송 현 1 동 선 거 구	2	송현1동일원
송 현 2 동 선 거 구	2	송현2동일원
본 동 선 거 구	2	본동일원

**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**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내무위원회 12명
2. 사회도시위원회 13명
3. 운영위원회 10명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내무위원회
  - 가.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2. 사회·도시위원회
  - 가. 사회·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나.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운영위원회

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
제5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